

차대번호(원동기형식) 통보서
[]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[] 표기시행 폐지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(명칭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	
	주소		
변경내용	변경 전		
	변경 후		
표기	폐지사유		
	폐지예정일		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

- 표기시행자의 변경(성명,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)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, 표기시행자가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